

##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사방지 지정·고시

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·고시하고,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. 9. 17.

파 주 시



1. 지정내역 : 2024년 7월 산림피해복구사업
2. 지정사유 : 사방사업(산림피해복구사업) 시행지
3. 대 상 지 :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1-15번지 외 3개소(붙임 참조)
4. 행위제한 : 사방지에서의 입목·죽의 벌채, 토석·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, 가축의 방목,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·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.
5. 열람 및 문의사항
  - 가.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파주시 산림정원과에서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  -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산림정원과(산림보호팀 ☎031-940-462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